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교육지원 등 〉

■ 이종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382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교육지원 등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종욱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6. 8. 3.
3. 회 부 일 : 2026. 8.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생활기록 등 학생 관련 자료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취학의무 이행 독려에도 불구하고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 기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경우 학대·방임, 은둔·고립, 심리·정서 문제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는 학생의 소재 확인이나 출결 관리만 하고 있을 뿐 학생의 안전확인,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 등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또한 학교와 교육청이 관계기관과 연계해 지원하려는 경우에도 학생 관련 자료 제공 근거가 불명확해 신속한 개입이 어렵고, 보호자가 안전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효성 있는 대응수단이 부족함.

이에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안전확인,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 및 보호자 협조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장기 미인

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 28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교육지원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 및 학업 복귀 지원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육감의 조치 및 가정방문,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관계기관 연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자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며, 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예외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제30조의6제1항제6호 및 제68조제1항제3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8조의3(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결석(이하 “장기 미인정결석”이라 한다)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고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이 학업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지원 및 조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정서적·신체적 안전 확보 및 학업 복귀에 필요한 상담·학습지원·심리치료·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에 지원 및 조사·수사 요청, 제3항에 따른 지원 방안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및 해당 학생의 보호자와 면담, 가정방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보호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치, 지원 및 조사·수사 요청, 지원 방안, 면담 및 가정방문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에 지원 및 조사·수사 요청의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지원 방안의 기준·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면담 및 가정방문 등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②·③ (생략)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u><신설></u> 3. (생략) ② (생략)	<u>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 ~ 5. (현행과 같음) 6. <u>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지원 및 조사·수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경우</u>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8조(과태료) ① _____ _____ _____. 1.·2. (현행과 같음) 3. <u>제28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 및 지원 조치에 협조하지 아니한 보호자</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학생의 결석은 질병·미인정·기타 결석으로 구분되며¹⁾, 이 중 미인정결석은 관계 법령에 따른 출석정지나 학생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고의 등에 따른 결석을 의미함²⁾.

장기 미인정결석은 현행 법령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시·도교육청은 통상 초·중학교의 경우 미인정결석이 10일 이상, 고등학교의 경우 7일 이상 계속된 학생을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으로 보고 있음³⁾.

- 현행법 시행령 제25조⁴⁾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 중인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출결사항) ② 출결사항은 별표 8에 따라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로 나누어 입력하되, 질병·미인정·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

2. 결석

라. 미인정 결석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초·중학교: 10일(인천·세종: 7일, 대전·강원: 9일), 고등학교: 7일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는 등의 경우에 지체 없이 보호자 등에게 해당 학생의 출석 등을 독촉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92조의2⁵⁾에서 고등학교의 장은 동일 사안에 대하여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기 미인정결석의 경우, 현행법 시행령 제29조⁶⁾에 따라 초·중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으며, 제25조제5항⁷⁾에 따라 해당 학생이 새 학년도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학년도 시작 한 달 전까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한편, 동 시행령 제27조의2⁸⁾에 따라 설치된 취학관리 전담기구가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2(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① 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3.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이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 항 제2호의 장기결석 학생이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했으나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학생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총괄 하고, 아동 보호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으로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제5호라목의 경우는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에 한정한다)의 업무를 수행한다.

5. 다음 각 목의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장기결석으로 통보·보고된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의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025년 11월 기준 초·중·고등학교의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은 약 1만 8,000명이며, 그 사유로는 해외출국, 대안교육, 가정 내 학습, 학교 부적응, 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이 있음.

<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수 및 결석 사유별 건수('25.11.30. 기준) >

(단위: 명, 건)

학교급	학생 수	사유별 건수					
		합계	해외출국	대안교육	가정내학습	학교부적응	기타
초	7,522	7,601	3,442	2,906	687	126	440
중	7,105	7,267	1,578	1,324	964	2,588	813
고	3,517	3,627	81	9	41	2,453	1,043
합계	18,144	18,495	5,101	4,239	1,692	5,167	2,296

(자료: 교육부)

나. 제25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으로 그 경과가 통보되거나 보고된 아동이나 학생

라. 제92조의2제2항에 따라 장기결석이나 제적·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사유로 그 경과가 통보된 아동이나 학생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담기구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취학의무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감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92조의2(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②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성명 및 장기결석이나 제적·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경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한 학생
2. 해당 학교에서 제적·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

□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은 학대·방임 등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⁹⁾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결석 원인과 학생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보호자 면담·가정방문,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경우 상담·학습지원·복지서비스 연계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보호자가 학생의 안전확인이나 면담·가정방문 등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개정안은 보호자의 협조의무를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자의 협조를 유도하여 학생의 안전확인과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및 지원 조치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교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¹⁰⁾.

9) 교육부 등 유관기관에서 2023년 실시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전수조사 결과, 조사 대상 6,871명 중 이상징후가 의심·발견되어 아동학대 신고 또는 수사 의뢰·연계가 이루어진 사례는 59건이며, 이 가운데 학대 혐의가 확인된 19건에 대한 수사 결과, 아동보호사건 송치 13건, 기소 송치 5건 및 불송치 의견 1건으로 처리되었음(자료: 경찰청).

그런데 개정안 제28조의3제2항은 학교의 장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게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조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행 아동학대 신고체계와 일부 중첩될 수 있음.

□ 또한,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지도, 시설 입소 및 전문치료기관 입원 등의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게 상담·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¹¹⁾.

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11)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인력(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인복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의 정서적·신체적 안전 확보를 위한 상담·심리치료 등 지원 내용은 현행 아동 보호·지원체계와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학생맞춤통합지원법」¹²⁾은 아동학대로 학습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상담·학습지원·복지서비스 및 의료지원 등의 연계와 학생별 지원·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¹³⁾.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도 결석 원인과 지원 필요성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될 수 있는바, 개정안의 상담·학습지원·심리치료·복지서비스 연계는 현행 지원체계 내에서도 실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개정안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지원 및 조사·수사를

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다.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12)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분절된 기존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사업 간 연계 및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2025년 1월 21일 제정되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임.

- 13)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에게 이루어지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의 지원

나. 그 밖에 학생 등의 학습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위하여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30조의6제1항제4호¹⁴⁾에 따라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과의 중복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자료제공 사유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은 보호자의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학습지원·심리치료 등 지원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은 학생의 상황에 따라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원 여부와 방식에 관하여 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안전확인에 대한 비협조뿐 아니라 지원 거부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과 학업 복귀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 학생 관리·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와의 중복 가능성 및 지원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과 학업 복귀

14)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를 지원하고,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명시 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취학관리·학생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와의 중복, 개인정보 제공 범위의 포괄성, 지원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일부 시·도교육청¹⁵⁾은 관계기관의 조사 협조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자의 협조 거부 및 과태료 미납 시 대응수단을 보완하며, 교육장을 보고·지원체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5) 인천·강원·충북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과 학업 복귀를 지원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
- 안전확인·가정방문·학생 지원 및 조사·수사 요청 등이 현행 취학관리·학생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중복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서만 별도의 조치와 보호자 협조의무를 규정하는 경우, 현행 취학관리 업무와의 관계 및 미취학·유예·면제 아동·학생과의 형평성 검토 필요
- 자료제공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가능한 부분이 있으며, 학생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 및 최소 정보 제공 원칙을 고려한 검토 필요
- 학생·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현행 지원체계를 고려하여 지원에 대한 비협조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재대상이 되는 협조의무의 내용과 불이행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

○ 시·도교육청

(인천) 신중검토

- 개정안은 학교에 보고의무를 부과하면서 관계기관의 후속조치는 의무화하지 않아 학교 현장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학교의 지원·조사·수사 요청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무 강화 필요
- 보호자의 협조의무 명시에는 긍정적이나, 협조 거부·과태료 미납 시 대응수단 및 과태료 징수 절차 보완 필요
-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협조 규정 마련 필요

(강원) 일부수정

- 학교의 인력과 재량만으로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학교가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할 필요

(충북) 일부수정

-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이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절차 수정 필요
-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이 협력하여 아동학대 피해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교육장의 학생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규정 신설 필요

문 의 처

02)6788-5184